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최민희·조인철·박민규

전용기 • 박해철 • 서영교

박수현 · 임미애 · 황정아

박희승 • 강선우 • 송재봉

윤건영 · 이연희 · 허 영

이성윤 • 이수진 • 한민수

진성준 • 문진석 • 모경종

박균택 • 백승아 • 이병진

천준호 • 김 현 • 김문수

정성호 · 이광희 · 강유정

김성환 · 김태년 · 김영배

이정헌 · 정진욱 · 양부남

허성무 의원(3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 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 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.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.

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, YTN 민영화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.

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). 법률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"2인"을 "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	제13조(회의) ①		
<u>2인</u>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	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		
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	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		
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	<u> 으며 2인</u>		
할 수 있다.	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